

청구취지 변경 신청서

14

사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 [담당재판부: 민사 제 합의부]
원고 김명호,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15, 상도중앙하이츠빌 105동 1504호
(집: 02-813-8913, 휴대폰:010-5590-8913)
피고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,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이사장 권이혁

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 신청합니다.

변경 전 청구 취지

- ① 원고가 96년 3월 1일자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성균관대학교의 교수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
 - 2.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, 96년 3월 1일자 책임용 거부행위를 취소한다.
 - 3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변경 된 청구취지

- 1. 원고가 96년 3월 1일자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성균관대학교의 교수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
- 2.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, 96년 3월 1일자 책임용 거부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.
- 3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2005년 10월 19일

원고 김명호



97805



✓ 1. 갑 제28호증: (20년간 양심적인 교수들을 대학에서 축출한) 대법원의 재
임용 법-해석의 문제점

26 1. 갑 제29호증: 최재천 의원의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서(2005. 10. 6.)

✓ 1. 갑 제30호증: 서울 중앙 지법 국정감사 질의서(2005. 10. 4.)

27 1. 갑 제31호증: 시험과 성적에 관한 학칙, 학칙시행령 및 내규(93-94 성균
관대학교 요람)

18 1. 갑 제32호증: 95학년 1학기 위상수학1 학기말 시험 백지 답안지(29명)

28 1. 갑 제33호증: 재시험에 응한 김명형, 김원용의 백지 및 재시험 답안지

30 1. 갑 제34호증: 94년 1학기 수학1의 성적 기록표 및 출석표

31 1. 갑 제35호증: 93학년 2학기 수학2와 94학년 2학기 수학2의 성적기록표
및 출석표

37 1. 갑 제36호증: 총장에게 보내는 탄원서, "김명호 교수의 징계를 반대하며
(1996년 2월 16일)

38 1. 갑 제37호증: "문제 오류 동점처리 타당"(연합뉴스 2004년 4월 14일자)

2005년 10월 21일

위 원고 김명호



서울고등법원(민사 제14부 다) 귀중

2005년도 국정감사 질의서

(열린우리당 최재천의원)

대상기관	대법원	일시	05년 10월 6일 10:00	번호	
주제	사립학교 교원 재임용 사건에 드러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				

○ 현 황

1. 교원재임용 대표적 판결

가. 1977. 9. 28. 선고 77다300 판결

-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에 대한 최초 판결
-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은 당연히 예정된다는 취지임.
- "...대학교원의 임기제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서의 재임용의 취지는 대학교원의 자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, 학회활동, 학생지도능력과 실적교육관계법의 준수 및 품위유지 등으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참작하여 특히 대학교원으로서의 현저하게 부적법하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자를 도태하고자 하는데 있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..."

나. 1987. 6. 9. 선고 86다카2622판결

- 위 77다300 판결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최초 판결
- 이후 이러한 대법원 입장은 계속되고 있음
- "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임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만약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 및 통지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교원과

76 27 - 1